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과 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이 민족의 소망과 열망인 평화통일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북한 동포에게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과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연고 등)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통일방향을 홍보하고 북한동포의 사랑의 실천(물자지원)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동포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구충제, 연고 등) 지원
2. 북한동포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 지원
3. 북한 교류 및 시설지원.(봉수 빵공장, 냉동설비.)
4. 북한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예배처소 물품지원
5.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간행지 발간
6. 북한선교(가정예배 처소 중심)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친 자, 단 회원은 1년 1회 이상의 자발적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 소정의 서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므로 탈퇴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있고 협의회에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

2. 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협의회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진다

제8조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의회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의회 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회비의 장기 미납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이 한자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대표회장과 이사장 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정한다.

② 임원중 대표회장 1인(당연직이사), 이사장 1인, 수석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 간 명, 상임이사, 사무총장1인 (당연직이사), 이사 약간 명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의 구성에 있어서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의 임원 수는 임 원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혈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대외적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장은 본 협회의 대내적 업무를 대표회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

③ 수석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대표회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 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회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의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장과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대표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이사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수석부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대표회장이 이사장과 합의해서 소집한다.

1.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사항
2. 제16조 ①항의 1, 2, 3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18조 [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대표회장,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약 간 명),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회장과 이사장이 합의해서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소집] ①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사장과 합의해서 임시 이사회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회장이 이사장과 합의해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감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4조 [서면결의] 대표회장과 이사장 및 수석부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장관의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25조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①통일 관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정계인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덕망가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은 대표회장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행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이사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3. 기본재산은 5천 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경비의 조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현금,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하며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7장 집행기관

제34조 [사무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①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내외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35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대표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해서 임명하고 본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36조 [직제 및 직원] 사무처의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본회의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개정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본 정관에 의한 임원 명단은 별지와 같다.